평창군민제안조례안

의안 번호	230

제출년월일 : 2006. 05.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창의적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장려·개발하기 위한 군민제안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안자격은 응모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평창군을 본적으로 둔 자, 군민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출향군민, 평창군 주둔군인으로 함.(안 제3조)

나. 평창군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이를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제안심사기준은 창의성, 경제성 또는 능률성, 실용성(시책화 난이도,계속성,적용범위), 기타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으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도록 함.
(안제10조)

라. 창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의 순으로 구분 하여 결정하되, 창안자에 대하여는 평창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 및 시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창안이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군수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고, 창안 실시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3조,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예산부서 협의
다. 관계부서승인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 2006.02.10~03.02(20일간), 제출의견 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민제안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군정전반에 관한 군민의 창의적 제안을 적극 발굴하고 장려·개발하기 위한 평창군민제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라 함은 군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군정시책의 발전방안과 행정의 제도개선 등 효율성, 능률성 제고를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라 함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시"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제안자격) 제안을 할 수 있는 자는 응모일 현재 평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평창군을 본적으로 둔 자, 군민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출향군민, 평창군 주둔군인으로 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①제안은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③ "지정제안"이라 함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의 시기 등) ①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공모한다. 단, 지정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시기를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모사항은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6조(제안범위 및 내용) 제안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군정 및 행정제도의 능률성,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혁신적 방안
2. 군민 생활편익을 도모하거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3.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이나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4. 기타 군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

제7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특허, 실용신안, 의장등록 출원중 이거나 그 권리를 이미 취득한 것
3. 공무원제안제도등 기존의 제도에 의하여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구성) ①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평창군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평창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실시범위, 평가기준 및 방법
2. 제안의 심사채택 및 심사등급결정
3. 기타 제안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10조(심사기준) ①제출된 제안은 다음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실용성(시책화 난이도, 계속성, 적용범위)
4. 기타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한 심사기준

②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규칙으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노력성
2. 경제성

제11조(창안등급 및 시상) ①창안의 등급은 특별상, 우수상 및 우량상의 순으로 구분하여 결정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②창안자에 대하여는「평창군포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하되, 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상금을 지급한다.

제12조(권리의 승계) 군수는 창안이 「특허법」에 의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거나, 「실용신안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고안이거나, 「의장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의장에 해당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

제13조(창안의 실시) ①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이송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된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부서장은 그 사유를 지체없이 군

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전문용역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창안의 실시평가) 군수는 창안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고 문제점 발생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행범위나 방법 등을 개선하거나 시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